

檢 討 報 告

□ 制定背景

- 지방채무관리및지방채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규정(행자부예규)에 의거,
-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투자재원 충당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상환원리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,
- 향후 대단위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상환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코자 함.

□ 主要内容

- 기금조성은 일반 및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하되,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함(안 제2조).
- 기금의 용도는 일반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사용함(안 제3조).
- 기금은 시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함(안 제4조).
-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, 기금운용심의회를 두어 이를 심의함(안 제5조, 안 제6조).
-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관(기획감사실장)과 기금출납원(예산담당)을 둠(안 제7조).

□ 檢討意見

-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투자재원 충당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상환원리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,
- 이와 관련해 지방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채무상환비율이 10% 미만인 자치단체에는 활용을 권고할 뿐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, 지방채무관리및지방채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규정 제 13조(행자부예규)에 의할 때는 현재 계룡시의 부채비율이 41.9% 이므로 본 기금 설치가 의무사항이 될 수 있으며,
- 타 자치단체에도 이미 대부분 제정되어 있고, 도 등의 상급기관의 재정운영상황 평가에 있어 본 기금의 운용여부가 하나의 평가 요소가 될 수 있고, 차후 지방채 승인에 있어 총액한도제(현재 행자부에서 검토 중)로 운영될 때 감채기금운용실적으로 그 총액의 한도를 증가시킬 수 있게 될 것이므로 『계룡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』의 제정 취지가 인정된다.
- 또한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